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10월)

- 다른 사람이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면 실제 창작자는 보호받지 못하나요? -

2026. 11. 27.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본 이미지는 생성형 AI(ChatGPT)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.

□ 10월 주요 상담사례

ㅇ 다른 사람이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면 실제 창작자는 보호받지 못하나요?

- **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.** 따라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

- 법원도 "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'무방식주의'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,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"라고 판시한 바 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노3421 판결).

-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성명, 창작연월일, 공표연월일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·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제도이다.

- 저작권을 등록하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, 등록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(제53조 제3항). 다만, 창작연월일은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추정된다(제53조 제3항).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(제125조 제6항), 요건을 갖추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(제125조의2).

- 이러한 등록의 효과는 '추정'이므로 반대되는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. **다른 사람이 먼저 자신을 저작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실제 창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깰 수 있다.**

- 아울러 **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한 경우에는 허위등록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**. 저작권법은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(제136조 제3항 제2호).

> ■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(저작권)
>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
□ 저작권 용어 풀이

ㅇ 무방식주의

- '무방식주의'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, 저작권 표시(ⓒ), 등록, 납본, 기탁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(저작권법 제10조 제2항).

- 무방식주의는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원칙이다. 우리나라가 1996년 가입한 「문학·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」 제5조 제2항도 "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"라고 규정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

- 저작물에 ⓒ 표시나 'All rights reserved'와 같은 문구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표시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한다.

- 참고로,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,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이 저작자라는 사실과 창작 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. 저작권 등록은 이러한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.

* '챗봇'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챗봇: 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'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10월)'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'(주)우아한형제들, 한나 Air' 글꼴로 작성